

【이용계약에 관한 사항】

제95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기관과 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,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6조(계약의 목적)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며,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제97조(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재가급여의 일반원칙,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)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. (다만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.

가. 월 이용료

1) 월 이용료는 [별표 1]과 같으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.

나. 본인부담금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- 2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,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.
- 3) 40%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9%를 부담하고,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6%를 부담한다.

다. 이용료 수납

- 1)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게 우편, 메일,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.
- 2)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를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.
- 3)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라. 이용료 미납관리

- 1)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.
- 2) 미납금이 발생 할 경우 공문,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.
- 3)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.
- 4)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마. 그 밖의 비용부담액

- 1)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

-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2)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.
- 3)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.

제98조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) 기관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신원인수 방법

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(가정), 가화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(보호자)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.스

나. 신원인수인(수급자 또는 보호자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1)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
- 2)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3)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
- 4)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
- 5)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

다. 신원인수인(수급자 또는 보호자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1)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
- 2)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3) 인적사항,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5)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
- 6)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

제99조(계약의 해제)

가. 계약해지는 수급자(보호자)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.

나.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.

- 1)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2)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3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
- 4)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5)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(보호자)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6) 폭행, 욕설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- 7)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
- 8)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
다. 대상자(보호자)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,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

전달한다.

- 라. 대상자(보호자)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.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마.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【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】

제100조(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및 절차)

가.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- 1)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
- 2) 고시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
- 3)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 되었을 경우
- 4) 수급자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5)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서비스 변경 요청으로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경우

나.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- 1)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.
- 2) 계약서(표준약관),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.

【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】

제101조(서비스의 내용)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

가. 방문요양 서비스

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인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,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도모하며,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.

- 1) 신체활동지원서비스 : 세면도움, 구강청결도움, 식사도움, 몸단장, 옷갈아 입기 도움, 머리감기 도움, 몸 씻기 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이동도움, 체위변경, 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 등
- 2) 인지활동 지원 : 인지자극 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
- 3) 정서지원 서비스 : 의사소통 도움, 말벗, 격려 등
- 4)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: 외출시 동행, 산책, 병원동행, 식사준비,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, 세탁

나. 방문목욕 서비스

- 1)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

로 제공

- 2) 목욕준비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 감기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
- 3)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4)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내 목욕과 가정내 목욕으로 구분한다.

다.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어르신에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
- 2)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시장보기 등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